

인천광역시의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인천광역시의회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0
----------	----

제출년월일 : 2010.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이유

가. 상위법과 상충되는 보조금 지원 조항에 대한 개정을 통하여 보조금 지원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로 개정하여 보조금 지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함.

□ 참고사항

가. 실·국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1부.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인천광역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를 “인천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를 “인천광역시의정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정회”를 “인천광역시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을 “그 밖에”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회에 대하여 인천광역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인천광역시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장”을 “시장”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인천광역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u>인천광역시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u>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① 의정회는 인천광역시의회의 전임의원(인천시의원을 포함한다) 및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생략)</p> <p>③ <u>의정회의 설립, 육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u></p> <p>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u>각호</u>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 ~ 4.(생략)</p> <p>5. <u>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p>	<p><u>인천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 <u>인천광역시의정회</u>----- ----- ----- -----</p> <p>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① 인천광역시의정회(이하 “<u>의정회</u>”라 한다)----- -----</p> <p>②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제3조(사업) ----- ----- <u>각 호</u>----- -----</p> <p>1. ~ 4.(현행과 같음)</p> <p>5. <u>그 밖에</u> ----- ----- --</p>

실·국별 협의와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등의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 ○ ○ ○ ○ ○
실·국별 의견수렴결과			
협의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10. 8. 24 ~ '10. 9. 13 - 내 용 : 의견수렴		“의견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고개요	의견제출처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 기 간 : '10. 8.24 ~ '10. 9.13 - 방 법 : 시보 및 인터넷 게재	사)인천광역시의회	○ 2007. 9. 7.자로 시에서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은 의정회 육성 조례를 사문화 하려는 의도로 보여지며, 의정회의 재정적 자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 미반영 -제4조(보조금의 지원) 규정은 상위법과 상충되는 보조금 지원 조항에 대한 개정으로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여 보조금 지원의 건전성 및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임.

관련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p>관계법령</p>	<p>□ 「지방재정법」</p> <p>○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지방재정법시행령」</p> <p>○ 제29조 (공공기관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 한다.</p> <p>②법 제17조제1항에서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지출을 말한다.</p> <p>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p> <p>④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⑤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관련법규 정비대상</p>	<p>“해당사항 없음”</p>
<p>특이사항</p>	<p>“해당사항 없음”</p>